

부산광역시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방법중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
-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증명의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
- 나.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3항)
- 다.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대상자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주던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정함(안 제8조제1항제1호)

3. 관련법령 및 조례

- 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(정의)
- 2)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의2
(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발급)

4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개정은 2002. 2월부터 실시하는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운영과 관련하여 제증명의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
-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1999. 9. 7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 내용중 개정되지 않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나
-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께서 설치장소, 발급서류 제한등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후 운용할 것을 지적하였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설치 운용시 주민들이 거주지 인접 지역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.

2002. 1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 삼 립